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9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,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u>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 규정은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의 시행일 이전('19. 7. 2.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<u>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</u></p>